24. 12. 16. 오후 2:31 인쇄

병력동원소집안내

병력동원소집안내

전시근로소집안내

병력동원후순위조정안내

병력동원소집안내

개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군사작전에 필요한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지정하여 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유사시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집

병력동원소집 대상

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병역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지정

병력동원소집 대상 중에서 계급, 병과, 군사특기,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최근 전역(간부 6년차, 병 4년차 이내)한 사람을 우선 동원지정

다만, 지역별 거주인원과 군에서 요구하는 지역별 병력수의 불균형으로 적격특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 또는 비적소 특기자가 지정될 수 있으며, 지역을 확산하여 지정함으로써 원거리 군부대로도 지정될 수 있음

동원령의 종류

국가동원령: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시 국가의 이용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 및 병력을 전국 규모로 동원

부분동원령: 일부 지역에서 국지전 발생 또는 적의 포격·침투·도발 등 국가비상사태 시 특정자원을 동원하거나 일부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및 병력을 동원

병력동원소집 구분

구분	병력동원소집	부분동원소집		
개 념	전시·사변 등 유사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 충원을 위한 동원	일부지역에서 국지전 발생 등 국가비상사태시 특정지역 일부부대의 조기증편을 위한 동원		
입영시기	국가동원령 선포 후	부분동원령 선포 후		
입영부대	병력동원 소집부대	부분동원 소집부대		
통지서	병력동원소집통지서(분홍색)	병력동원(부분동원)소집통지서(백색)		
동원령선포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 등에 공고			
소집권자	지방병무(지)청장			

24. 12. 16. 오후 2:31 인쇄

병력동원(부분동원)소집 입영(동원령 선포시)

신문·방송 등 공고를 통해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교부된 "병력동원소집통지서 (분홍색)"나 "병력동원(부분동원)소집통지서(백색)"에 기재된 입영일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여야 함.

(예시) 만약 국가동원령이 1월 1일에 선포될 경우

[입영일시 계산]

구분	다음 날	다음 날로부터 O일째 되는 날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7일째	•••
입영일자	1월2일	1월3일	1월4일	1월5일	1월6일	1월7일	1월8일	
입영시간	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시의 시간에 입영							

통지서의 「입영일시」가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 9시부터 10시까지"라면

1월 2일 9시부터 10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시면 됨.

통지서의 「입영일시」가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 9시부터 10시까지"라면 1월 8일 9시부터 10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시면 됨.

(예시) 만약 부분동원령이 1월 1일 12시에 선포될 경우

통지서의 입영일시가 "부분동원령이 선포된 시간부터 20시간 이내까지"라면

부분동원령 선포 시간부터 20시까지인 1월 2일 08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시면 됨.

만약 부분동원령 선포 없이 동원령이 선포된다면 "병력동원(부분동원)소집통지서"(백색)를 받은 사람도 통지서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의 입영일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여야 함. [입영일시 예시 등은 "병력동원소집 입영"을 참조]